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28호

「대전광역시 학교석면 안전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8일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대전광역시 학교석면 안전관리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대전광역시 각급 학교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나. 석면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석면안전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다. 석면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라. 석면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마. 석면건축물에 대한 교육홍보 사항을 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 교육수석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02-789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교육수석전문위원실(전화 042-270-5243,

FAX 042-270-5249, E-mail : bokdung@edurang.net)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학교석면 안전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각급 학교의 석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필요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소재 다음 각 호의 각급 학교에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5조(석면안전관리기본계획) 교육감은 학교석면 안전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석면 안전관리의 기본목표
2. 학교석면 안전관리 현황
3.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해체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
4. 그 밖에 학교석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석면안전관리시행계획) 학교의 장은 제5조의 석면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석면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석면점검)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건축물이 석면건축물인 경우 정기적 또는 수시적으로 석면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해당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각급 학교의 석면건축물의

석면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후속조치 등)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석면점검 결과에 따라 학교석면건축물에 대한 적절한 석면피해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석면정보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석면건축물 시설의 개·보수 및 해체시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홍보) 학교의 장은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석면건축물에 대한 이해와 관리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2014.3.18.] [법률 제12460호, 2014.3.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함유제품"이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 물질을 가공·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3. "개발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허가·면허 등(신고에 대한 수리를 포함하며, 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석면이 비산(飛散)되거나 비산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 개발사업
 -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다.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 토석채취 등에 따라 석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
4. "승인기관"이란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건축물석면지도"란 건축물의 천장, 바닥, 벽면, 배관 및 담장 등에 대하여 석면 함유물질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하여 나타낸 지도를 말한다.
6. "석면건축자재"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건축자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유아교육법

[시행 2014.4.29.] [법률 제12336호, 2014.1.28, 일부개정]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4.4.29] [법률 제12338호, 2014.1.28.,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